품질관리규정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	비 고
제11조(구매관리) ① <생략> ② <생략> ③공사관리부서(또는 구매요청부서)는 이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단, 계약조건, 물품특성 또는 기타 사유로 품질관리계획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<개정 2014. 7.15>	제11조(구매관리) ① <현행과 같음> ② <현행과 같음> ③공사관리부서(또는 구매요청부서)는 이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단, 계약조건, 물품특성 또는 기타 사유로 품질관리계획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**있으며, 이러한 경우 사유서를 품질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10.27.>** **부 칙 <2015.10.27.>** **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**	